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12
------------	-------

발의연월일 : 2018. 5. 17.

발의자 : 박선숙 · 박지원 · 윤영일
장정숙 · 채이배 · 김현권
권칠승 · 이용호 · 김관영
박주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에 대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 방송평가, 시정명령의 횟수와 불이행사례,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그 위반 여부가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지 않아 위반행위가 근절되기 어려움.

이에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 심사사항으로 다른 법령의 위반여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제2

호의2 신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허가·재승인의 심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7條(再許可 등) ① · ② (생 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 는 방송통신위원회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再承認을 할 때에는 第10 條第1項 各號 및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查하고 그 결과를 公 表하여야 한다.	第17條(再許可 등)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 ----- ----- ----- ----- ----- -----. 1. · 2. (생 략) <u><신 설></u> 3. ~ 6. (생 략)
④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u> 3.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